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08 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임호선·김재원·문대림

오세희 • 이재정 • 정준호

정일영 · 김영호 · 임미애

김동아 · 김영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·면· 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 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하나의 개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, 혁신도시나 신도시 구역이 행정구역상 여 러 읍·면·동에 걸쳐 있어 정작 해당 혁신도시나 신도시 내에 사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·면·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

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(안 제148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8조제1항제4호 중 "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"를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
나. 생활권이 여러 읍·면·동에 걸쳐 있어 1개소의 사전투표소로 는 투표 편의 보장이 어려운 경우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	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
구・시・군선거관리위원회는	
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	
(이하 "사전투표기간"이라 한	
다) 관할구역(선거구가 해당 구	
·시·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	
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	
다)의 읍•면•동마다 1개소씩	
사전투표소를 설치・운영하여	
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	
추가로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천재지변 또는 전쟁·폭동</u> ,	4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</u>
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	<u>해당하여</u>
<u>하여</u>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	
치・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	
할 구・시・군선거관리위원회	
가 인정하는 경우	
<u>&lt;신 설&gt;</u>	가. 천재지변 또는 전쟁 • 폭
	동, 그 밖에 부득이한 사
	유가 있는 경우

<u>&lt;신 설&gt;</u>	나. 생활권이 여러 읍・면・
	동에 걸쳐 있어 1개소의
	사전투표소로는 투표 편의
	보장이 어려운 경우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